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나2813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3나2813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소156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최승룡

변론종결 2024. 7. 9.

판결선고 2024. 9. 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소156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유료회원 모집·관리 등에 관한 텔레마케팅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인 D는 2022. 3. 말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1. VIP 1000 안심결제 익월부터 1회차 111만 원 소비

2. 최대 9개월(9번)까지 할인 적용가능

3. 중도취소 가능시점 4월말 이후부터 언제든지 가능

다. 원고는 2022. 3. 21.경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

D: 진행 한번 해 드려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사모님은 폭발 주 한정판이자 예외적으로 언제든지 중도에 간편 취소 가능한 납부 방법 등록 건이니까.

원 고: 네. (중략)

D: A님은 2022. 3. 21.부로 E부서 D 과장과 비대면 상담하셔서 VIP 긴급 정보 라인을

타게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 고: 네.

D: 네, 제가 얼마에 맥시멈 몇 개월까지 도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원 고: 예?

D: 한 달에 111만 원.

D: 얼마를,

원 고: 2,000 투자하고 1억 보장.

D: 한 달에 111만 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원 고: 한 달에 111만 원이요?

D: 아,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말에.

원 고: 그니까 다음 달까지는 만약에 한 달 후에 수익을 나면 111만 원 결제된다는 거
죠?

D: 그렇지. 예상 수익 1억 원 버시고 나서.

D: 하지만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안심결제 건은 다음 달에 저희 폭발주로 이거 500%
이상 수익률 내실 때쯤 1회차 소비가 되실 건데, 다음 달에 수익률 만족되셨으
면 연장, 유지해주시면 되시고요. 어, 우리 사모님께서서는.

원 고: 그니까 한꺼번에 다 1,000만 원 끊는 건 아니잖아. 그죠?

D: 그래서 저희 다음 달에 우리 사모님께서 수익을 보셨다 하더라도, 취소해달라고 요
구하시면 중간에 취소가 5초 만에 바로 가능하세요.

원 고: 아, 네, 알겠습니다.

D: 때문에 이 111만 원에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달 1일차 소비되실 때쯤 어, 1억 은
수익에서 일부 빼서 기분 좋게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원 고: 그렇죠.

D: 오늘은 안심 후불제로 처음 진행하는 폭발주로 지금 들어오신 건데, 이번에 저희 그
폭발주가 1,000만 원 이상 진입하는 단체 건이라 등록 건이 너무 많아서 그 9

개월로 등록해 드려야 하는데. (중략) 근데 이번에 저희 진행하는 폭발주 정보 라인 등록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 고: 예.

D: 100억 한도 전부 소진이 된 상태라 오늘은 단순히 그냥 일시불로 등록만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라. 원고와 피고는 2022. 3. 21.경 가입비를 1,000만 원(다만 아래 계약서에는 8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하는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가입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증권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간은 3개월로 한다(이하 '서비스 제공 기간'). 단, 회사는 프로모션 및 이벤트 기간 중에 서비스 제공 기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료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본 계약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한다).

제2조(가입 금액)

1. 본 계약에 따른 가입 금액은 8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2. 회사는 회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 항에서 규정한 가입금액 외에 별도의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환불 규정)

1. 회원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환불금액 = 회원 결제금액 - (1일 이용금액 * 서비스 이용일수) - 환불수수료

5.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환불은 카드 결제 취소로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 요금을

최소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은 전액 취소 후 차액납입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차액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전액 취소처리 한다.

특약 1. 책임 정찰제

1. 서비스 제공기간 및 추가적으로 제공된 무료기간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 수익률 5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누적수익률이란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추가적으로 제공된 무료기간 동안 제공하는 추천종목의 비중을 무시하고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회원의 계좌수익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원고의 신용카드로 2022. 3. 21. 25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결제되었다.

바. 위 금액 중 150만 원은 2022. 6. 17.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가입비 1,000만 원은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다음부터 1개월에 111만 원씩 9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피고는 가입비 1,000만 원 전액을 결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

3. 판 단

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취소 여부

위 기초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제공하는 증권정보제공 서비스의 내용, 가입비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4. 7. 4.자 준비서면이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① 피고 측의 D2) 는 2022. 3. 말경 원고에게 'VIP 수익인증'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한 추천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을 선별적으로 제시하여 홍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 체결 전인 2022. 3. 21.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2,000만 원 투자하고 1억 원 보장(이라고 설명 들었다)'이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 수익 1억 원 버시고 나서 (가입비를 납부하면 된다)'라거나 '다음 달에 저희 폭발주로 500% 이상 수익률 내실 때쯤 1회차 소비가 되실 건데'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책임정찰제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기간 및 추가적으로 제공된 무료기간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5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6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정보를 제공받으면 몇 개월 이내에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 3. 말경 원고에게 'VIP 1000 안심결제 익월부터 1회차 111만 원 소비, 최대 9개월까지 할인 적용가능'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피고에게 '한 달 후에 수익을 내면 111만 원 결제된다는 거죠?'라고 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렇지. 예상 수익 1억 원 버시고 나서'라거나 '다음 달에 저희 폭발주로 이거 500% 이상 수익률 내실 때쯤 1회차 소비가 되실 건데'라고 말하였으며, 원고의 신용카드로 가입비 1,000만 원 전액을 결제하면서도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일시불로 등록만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일단 원고의 신용카드를 등록만 해둔 다음 수익률 500% 이상을 달성하면 그때부터 가입비를 111만 원씩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는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가입비의 납부방법 및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단기간에 수익률 5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까지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달리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 전액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는 위약금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위약금 2,222,222원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2022. 3. 21.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가입비 합계 1,00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그중 15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원고에게 반환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입비 8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입비 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입비 결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0.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³⁾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소영, 판사 전승환, 판사 김경애

1)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사기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이하 '강행규정 위반 주장'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강행규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심에서 강행규정 위반 주장은 철회하였고, 사기 주장만 유지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와 유료회원 모집·관리 등에 관한 텔레마케팅 위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직원인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D의 행위를 피고의 행위로 보고, 이하에서는 '피고'라고만 기재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그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바(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강행규정 위반 주장과 사기 주장은 하나의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원고의 강행규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사기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